

제416회 임시회
'24. 4. 23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4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2일

3. 제안사유

○ 임산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임산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임산부 산후조리비·교통비·태교 지원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○ 개정안은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임산부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(안 제11조제1항제1호),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(안 제11조제1항제2호)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1조(임산부 지원) ① 도지사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, 운동, 건강식품 구입 등 임산부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</u> <u>2.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,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</u> <u>3.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관광, 휴양시설을 활용한 태교 지원</u> <p><u>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</u></p>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충청북도 출생등록 인구수는 7,693명으로 2022년 대비 증가하였으나, 2018년 10,84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.
- 이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은 임신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〈2018~2022년 충청북도 출생등록 현황〉

(단위 : 명)

구분	계	남자인구수	여자인구수
2023년	7,693	3,962	3,731
2022년	7,576	3,871	3,705
2021년	8,330	4,206	4,124
2020년	8,748	4,479	4,269
2019년	9,362	4,875	4,487
2018년	10,843	5,551	5,292

- 현재 집행기관은 안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,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,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태교 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임신부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.
-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부에게 산후조리비, 교통비, 태교 지원 등의 방법으로 예우하는 것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,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임신부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임신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